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14 선고 2024나46637 판결 [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]

---

## 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14 선고 2024나46637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. 31 선고 2023가소112990 판결

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지역주택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

담당변호사 강정목

변론 종결 2024. 10. 24.

판결 선고 2024. 11. 14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. 31. 선고 2023가소112990 판결

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3. 7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윤영

판사오지영

판사양철순